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4073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676	**세목**	상속증여세
생산일자	2026. 09. 30.	**귀속연도**	
제목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기준일		
요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할증과세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299(1997.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299, 1997.8.29.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세율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1950년 실종되어 1955년 8월 실종기간 만료되었고, 2020년 1월 실종선고 되었으며, 자녀 3명(B, C, D)이 있음

- B는 1967년 사망, C는 2024년 1월 사망, D는 2016년 1월 사망함

○ A의 실종선고 사실 및 A 소유 토지(이하 “쟁점 토지”) 존재를 C만 알고 있었고, C의 사망 직전 알게 된 C의 자녀들은 C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 토지 중 C의 법정상속 지분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 한편, D의 사망 당시 쟁점 토지를 알지 못한 D의 자녀들은 D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해당여부

○ (갑설) 상증법상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며 D는 A의 실종선고일 이전 사망하였으므로 D의 자녀들은 A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A의 상속세 계산 시 상증법 제27조에 따른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을설)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일이므로 A의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 다. (생략)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 10.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세율】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7-0-2【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①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 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다.

[2] 민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현행)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구)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2026.3.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4. 관련사례

○ 재삼01254-1959, 1990.10.15.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717, 1996.12.6.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일46014-1081, 1997.5.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됨

○ 재재산46014-299, 1997.8.29.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

물건의 범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세율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재삼46014-2982, 1997.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서일46014-11880, 2003.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2016.7.7.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7723, 2022.7.20.

상증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국심-1999-중-1699, 2000.7.12.

민법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종선고자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은 실종선고자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법이 실종선고자의 경우 민법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를 상속개시일로 보면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2015헌바203 · 361, 2016.10.27.

【결정요지】

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

법형성의 영역에 속하고,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실종선고 심판절차에서 법원으로서는 실종 여부나 실종이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실종 여부나 실종기간의 기산일을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 등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 간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민법상의 상속규정을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는 부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미 실종선고가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상속인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민법은 제정민법에 비하여 가족제도 및 상속에 관하여 남녀의 평등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입법이며, 실종선고가 부재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적용 법률의 선택에 관한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속에 관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가 아닌 실종선고 시를 기준으로 개정민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7다360 · 377, 2017.12.22.

【판결요지】

[3] 1960. 1.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친족 · 상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구 관습에서는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도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다. 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혼인 외의 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법정 친자관계에 있었으나(제774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법 제774조가 삭제되어 이러한 법정 친자관계는 그 시행일인 1991. 1. 1. 소멸하였다(개정 민법 부칙 제4조).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는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舊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정 민법 시행 전에는 구 관습을 적용하고 제정 민법 시행 후에는 제정 민법을 적용하되, 개정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